

## EU로 수입되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제품 검사증명서

|  |  |         |
|--|--|---------|
| ① 발행기관 또는 당국(명칭 및 주소)  | ② EU 시행령 834/2007의 제33조제2항 또는 제33조 제3항이나 시행규칙(EC) 1235/2008의 제19조. |         |
| ③ 검사증명서의 일련번호  | ④ 제19조에 따른 승인면제 기준   |         |
| ⑤ 수출업자(성명 및 주소)  | ⑥ 관리 기관 또는 관리 당국(명칭 및 주소)  |         |
| ⑦ 제품 생산자 또는 처리자(성명 및 주소)   | ⑧ 발송 국가  |         |
|  | ⑨ 도착지 국가   |         |
| ⑩ EU내의 최초 수탁자(성명 및 주소)   | ⑪ 수입업자의 성명 및 주소  |         |
| ⑫ 마크와 번호. 컨테이너 번호, 번호 및 종류. 제품의 상품명  | ⑬ CN (통합관세분류) 코드   | ⑭ 신고 수량 |
| <p>⑮ ①에 따라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나 당국의 선언문</p> <p>이 증명서는 EU 시행규칙(EC) 1235/2008의 제13조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사항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발행되었고, 위에서 적시한 제품은 EU 시행령 834/2007의 규정에 따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유기 생산방법의 생산원칙과 검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.</p> <p>일자</p> <p>승인권자의 성명 및 서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발행당국 또는 기관의 직인</p> |  |         |

⑯ 승인을 하였거나 지정을 한 EU 회원국 관할당국의 선언문

위에서 지정한 제품은 ④에 나타난 승인번호에 따라서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9조의 절차에 따라서 EU에서 판매하도록 승인되었음을 증명한다.

일자

승인권자의 성명 및 서명

발행당국 또는 기관의 직인

⑰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의한 해당 화물의 검증

회원국 : .....

수입          등록(종류,          번호,          일자          및          세관          신고          사무소):  
.....

일자 : .....

승인권자의 이름 및 서명

직인

⑱ 제1차 수탁자의 신고

이는 해당 상품의 인수가 EU 시행령 889/2008의 제34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.

회사명

승인권자의 성명 및 서명

(주)

- ① **발행기관 또는 당국(명칭 및 주소)**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3조제3항에 따른 당국이나 기관 또는 기타의 지정된 당국이나 기관. 이 기관은 ③과 ⑯에도 역시 기입된다.
- ② **수입관련 EU 시행령 834/2007의 규정** 이 칸은 이 증명서의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관련 EC 규정을 나타내고 관련 규정을 나타낸다.
- ③ **검사증명서의 일련번호**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3조제4항에 따른 발행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부여된 인증 일련 번호
- ④ **제19조에 따른 승인면제 기준** 제19조에 따른 수입인 경우의 승인번호. 이 칸은 발행기관이 작성하거나 또는 해당 시점까지 그 정보를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이 수입업자에 의해 ⑯번 칸에 기입한다.
- ⑤ **수출업자(성명 및 주소)** 수출업자의 성명 및 주소
- ⑥ **관리기관 또는 관리당국(명칭 및 주소)** 발송하는 제3국의 유기 생산 방법 원칙에 따라 마지막 작업(포장 및 표시를 포함한 생산, 처리)의 적법성을 모니터 하는 관리 기관 또는 당국
- ⑦ **제품 생산자 또는 처리자(성명 및 주소)** ⑧에서 정해지는 제3국에서 해당 수화물에 대한 마지막 작업(포장 및 표시를 포함한 생산, 준비)을 수행한 사업자
- ⑨ **도착지 국가 목적지 국가**는 EU 내에서 최초 수탁자의 국가를 말한다.
- ⑩ **EU내의 최초 수탁자(성명 및 주소)** EU 내의 해당 화물 최초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. 최초 수탁자는 해당 화물이 인도되고 추가적인 처리 그리고/또는 판매를 위한 취급이 이루어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 최초 수탁자는 ⑱항도 작성해야 한다.
- ⑪ **수입업자의 성명 및 주소** 수입업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화물을 EU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방출하는 EU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.
- ⑬ **CN(통합관세분류) 코드** 대상 제품에 대한 통합 관세분류 코드(EU에서 사용하는 8

자리 숫자).

- ⑭ 신고 수량 적합한 단위(kg, 리터 등)로 나타낸 신고된 수량.
- ⑮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나 당국의 선언문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나 당국의 선언문. 서명과 직인은 인쇄된 내용과 다른 색이어야만 한다.
- ⑯ 승인하였거나 지정한 EU 회원국 관할당국의 선언문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만 작성함.  
해당 승인을 부여한 회원국 내의 관할당국이나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3조 제7항b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의 위임받은 기관이나 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. EU 시행규칙 1235/2008의 제13조제7항c호를 변형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말아야 함.
- ⑰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의한 해당화물의 검증 EU 시행령 1235/2008의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화물을 검증하거나 제14조에서 정한 조건으로 처리 또는 분할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회원국의 당국이 작성해야 함.
- ⑱ 제1차 수탁자 신고 EU 시행령 889/2008의 제34조에서 정한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화물의 인수 시점에서 최초 수탁자가 작성해야 함.